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5- 70호, 2005. 6 .29)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가. “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정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단, 적용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계속하여 진행중인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타 계속하여 과업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정한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의한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제7조제6항에 따른 감점은 구성원별로 각각의 취득점수에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술성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성 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전호의 기술성 평가에 준한다. 다만, 감점 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 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는 88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

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단,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중소기업간경쟁물품(용역포함) 중 2005년 4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물품(용역포함)에서 지정 제외되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 용역(전산업무개발 및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2.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차.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은 별도로 시행일을 공고한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3. **조달청공고 제2005-23호(2005.3.25)**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5.25~ △3.0	+5.25~ △3.0
	계		6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2×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100%이상	30	-	
		B. 70%이상~100%미만	27		
		C. 40%이상~70%미만	24		
		D. 10%이상~40%미만	21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15	-	
		B. 70%이상~100%미만	13.5		
		C. 40%이상~70%미만	12		
		D. 10%이상~40%미만	10.5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4.25~ △3.0	+4.25~ △3.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 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6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단 청 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 적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1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9		
		C. 40%이상~70%미만	8		
		D. 10%이상~40%미만	7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 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4.5		
		C. 40%이상~70%미만	4		
		D. 10%이상~40%미만	3.5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유지보수용역 및 s/w사업 공통)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 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5.25~ △3.0	+5.25~ △3.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의 1]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2개 분야)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 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5.25~ △3.0	+5.25~ △3.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1년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 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p>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3의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의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p>주)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5.25~ △5.0	+5.25~ △5.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년아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약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cdot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분야이거나 그 이 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10	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9	4.5	
		C. 40%이상~70%미만	8	4	
		D. 10%이상~40%미만	7	3.5	

2. 기술능력

심 사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9	9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 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	0
나. 기술보유 상황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B.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C.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KT, NT, EM에 한함) D.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우수 재활용제품품질인증(GR)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5.25~ △3.0	+5.25~ △3.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1.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20	△20
	2.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회안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circ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10	5		계약 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 실적
		B. 70%이상~100%미만	9	4.5		
		C. 40%이상~70%미만	8	4		
		D. 10%이상~40%미만	7	3.5		

2. 기술능력

심 사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액 5억원이상	추정가액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10	10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 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제외)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가 30점인 경우	배점한도가 10점인 경우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7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5	9.5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3	9.3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0	9.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7	8.7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5	8.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8.3	8.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0	8.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7.7	7.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5	7.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7.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④ 점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별표 7] ([별표 1 내지 별표 5]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기업)	0.5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
(나)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3)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고용율이 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
(2) 장애인고용율이 2.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또는 사후봉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0.5
자.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1.0
(2) 지체일수 30일 미만	△0.5
차.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2.0
카. 최근 1년 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2.0

※ 주)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자”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가”의 (2) 및 “나”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와 여성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여성고용인원수 또는 평균 장애인고용인원수(3개월간 전체고용인원 대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로 평가한다.
- ③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서 계산(최근 3개월간의 신규고용자를 누적하여 산술평균한 월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인원수로 계산)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② 및 ③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기준과 “다”항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와 “다”항의 평가중 높은 점수로서 적용한다.
- ⑤ “라”항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고, (2)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되, (1)의 평가기준과 (2)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중 하나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단,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또는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 ⑥ “가”의 (3), “마” 내지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⑦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및 사후봉사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⑧ “자”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학술연구(), 시설관리(),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기술능력	기술인력		
				기술인증		
	장비보유					
	신인도					
	소계					
입찰가격						
합계		100				
결격사유						
총평정점		100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기술성	5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6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7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신인도	8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